수원컨벤션센터 전시홀 작업안전관리지침

(　　제정) 2020.06.16. 제2020-1-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전시홀 내 행사기간 중(설치, 행사, 철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후속 처리로 전시장 사용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도모하며, 형평성과 일관성 있는 전시장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장관리 및 현장대리인의 정의) ① 현장관리 대상은 등록이 지정된 분야(아래 제4조 4항 지정분야)의 수원컨벤션센터 지정등록업체로 한다. 기타 지정되지 않은 분야의 작업현장관리 대상은 작업을 수임받은 업체로 하며, 그 자격요건은 아래 3항을 준용하고, 필요에 따라 재단이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이란 전시홀 내 행사기간 중(설치, 행사, 철거)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주최자를 대신하여 공사현장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한다.

③ 현장 대리인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지정등록업체 중 자격증이 필요한 분야의 경우 관련 자격증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그 외 분야는 해당 분야의 근무경력 1년 이상 정규직 직원에 한한다.
2. 소속사의 4대 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 보험)을 들고있는 수혜자
3. 각 분야별 등록업체는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1명 이상의 현장대리인을 선정하여 매회 작업 신고 시 수원컨벤션센터에 현장대리인계 양식을 제출해야 하며, 미등록자는 현장대리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4. 현장 대리인 변경 시 현장대리인계 양식과 함께 해당 자격증, 4대 보험 가입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조(현장대리인의 책임과 의무) ① 행사에 관련된 모든 분야의 서류 작성 및 접

수를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작업자들에게 현장에서 전시장 운영규정, 지침을 준수하도록 사전 교육을 하여야 한다. 특히,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시설의 파손, 변형 시, 원상복구 책임은 현장대리인이 진다.

1. 행사 임대기간 동안 전시장 바닥에 별도의 표시물(예: 스티커) 사용금지
2. 전시홀 내부 차량 운행시 과도한 회전 및 주행금지
3. 양면테이프, 청테이프, 투명테이프 및 라텍스, 본드류 사용금지
   (식별가능하고 탈부착시 잔여물이나 흔적을 남기지 않는 테이프 사용)
4. 전시홀 내부에서 락카, 페인트, 잉크 사용금지
5. 목공부스 설치, 도배, 인테리어 작업 시 바닥에 보양물 설치
6. 전시장 내 차량 주유금지(불가피할 경우 보양물 설치)
7. 전시홀 내 누유금지
8. 행사기간 중 지정된 장소에서 식음은 가능하나, 식음시설 바닥에 별도 보양시설 설치
9. 철거 시 파이텍스 고정테이프 제거
10. 운반 시 물건 낙하로 인한 바닥파손 주의

③ 모든 장치 공정(마킹, 부스 공사, 바닥 공사, 천장 리깅 공사, 사인물 공사, 전기 공사, 기타 유틸리티 공사)에 대하여 현장 안전관리를 책임진다.

④ 공사 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통로 및 부스 내에 무단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단, 지정된 공사 쓰레기 전용마대를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부스 철거 후 원상복구 이상 유·무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⑥ 현장대리인은 전시 준비부터 철거를 완료하기까지 돌발상황 발생 시 홀매니저에게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등록업체 분야별 작업신고) ① 작업신고는 이메일을 통한 사전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재단의 작업신고 승인 후 작업 개시를 위해서는 현장대리인계, 작업승인서를 설치 첫날 10:00~12:00까지 재단에 제출, 공사현황표를 날인받아 해당 부스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작업신고는 설치 첫날 00시 기준으로 72시간 전까지(주말 및 공휴일 제외) 완료하여야 한다. 단, 리깅, 구조계산 등 안전상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작업에 한하여 행사 7일전 작업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기 사항에 대하여 수원컨벤션센터 홀매니저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③ 재단이 정한 작업시한을 엄수하지 못할 경우, 본 지침서에서 정하는 제재기준을 적용한다.

④ 분야별 필수 작업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필수 신고 내용	제출서류양식
전시디자인	o 전시홀 내, 외 및 로비 부스장치도면(평면도, 입면도. 조감도, 전기도면) 단, 복층, 철골, 리깅, 유리 공사 등 관련기관에 안전성 검사가 완료된 서류, 방염책임각서를 별도 제출	(공통)별지 제1, 4호 서식
전기	o 전체용량 및 전시장 EPS별 부하용량을 명시한 부스에 공급할 전시동력 맨홀 위치와 작업 전기 위치 기재 도면	(공통)별지 제2, 4호 서식
급배수 / Air	o 급수, 배수, 압축공기 시공 위치 및 돌출 배 관 라인 표시 도면	(공통)별지 제2, 4, 5호 서식
카펫 / 파이텍스	o 시공할 부스의 도면 및 자재 샘플 (단, 시공할 바닥재의 테이프는 재단에서 승인한 테이프만 사용) o 소방서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또는 한국소방기술연구원 방염성능검사결과보고서 제출	(공통)별지 제2, 4호 서식
운수통관	o 참가업체와 전시품에 대한 수량, 중량 각종 제원과 반·출입 일정	(공통)별지 제2, 4, 6호 서식
지게차	o 행사별 사용하고자 하는 지게차, 리프트 등과 운전자의 자격 및 매연관련, 제원을 명시한 리스트	(공통)별지 제2, 4호 서식
철거용역	o 철거하는 부스 표시도면과 철거계획 (장비, 인력, 위험물 철거, 안전사고 대책)	(공통)별지 제2, 4, 7호 서식
경비	o 행사별 경비업무에 따른 배치 신고서 o 매일 특이사항 및 익일 배치 근무자의 명단	(공통)별지 제2, 4, 8, 9호 서식
렌탈 (가구/비품)	o 행사별 반출입 일정 및 수량, 적재위치	(공통)별지 제2, 4, 10호 서식
광고물	o 옥내 외 설치하는 모든 홍보물의 시공계획서	(공통)별지 제3, 4, 11호 서식
Rigging	o 트러스에 대한 구조계산서 o 시공 후 현장 실사 확인서	(공통)별지 제2, 4, 12호 서식
구조계산 및 감리	o 지침 내 필요한 구조계산서, 구조계산 확인서	-
방염	o 소방서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또는 한국소방기술연구원 방염성능검사결과보고서 제출	(공통)별지 제2, 4호 서식

⑤ 관련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관에 승인을 득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작업 시 공통 의무사항) ① 전시홀 내에서는 흡연을 일체 할 수 없다.

② 재단이 정하는 안전장비(안전모, 안전조끼 등)를 착용해야 한다.

③ 구조물 설치 시, 전시장내 소화전과 비상구를 전면 개방하여 육안으로 식별 가능 하도록 노출하여야 한다.

④ 부스간 간격은 3m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⑤ 부스와 기존설치물(전시홀 칸막이, 전시장 벽체) 사이를 1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⑥ 구조물 설치시에는 전시홀 무빙월 보호선(노란색) 이상의 간격을 확보하여야 하며, 보호선 안쪽에 화물을 적재하지 말아야 한다.
⑦ 작업신고와 동일한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할 경우 홀매니저에게 즉시 신고하여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부스의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공업체는 본 지침에 의거 구조계산을 득하여야 한다.
⑧ 기 신고한 작업자만이 전시홀 내에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⑨ 구조상 안전하고 자립할 수 있는 구조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⑩ 각 연결부위는 최대한 체결하도록 한다.
⑪ 시공 후 발생되는 폐기물(바닥카펫 공사 시 발생되는 보양비닐 포함)등은 최종 시공업체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⑫ 목재, 천, 기타 방염대상 물품은 전문 방염업체에서 선후 처리한 방염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⑬ 바닥 카펫 공사 후에 비닐 보양은 장치 시공사에서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⑭ 전시홀 내에서 자재 표면에 페인트 작업을 할 수 없다.

제6조(사용자의 방화관리책임) ① 사용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전시장 내, 외 관리에 책임을 진다.
② 사용자는 소화전 및 비상구의 위치, 가스전, 전원 스위치의 장소 등을 확인하며, 매일 폐장 시 화원(火源)을 철저히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수주한 용역의 제공은 반드시 지정등록업체가 수행하며, 하도급 및 명의대여는 금지한다.
② 재단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임의로 계약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업무수행을 대행시킬 수 없다.

제8조(폐기물) 전시홀 내에서 발생한 공사 폐기물은 자체 수거를 하여야 하며 수원컨벤션센터 쓰레기 처리장 또는 그 외의 공간에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방치할 수 없다.

제9조(기타) ① 주최자 및 행사 주관사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 주최자 및 행사 주관사 업무와 관련하여 수원컨벤션센터 모든 지정등록업체

는 각종 제한 사항에 대하여 참가업체에 사전 공지하여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2장 분야별 공사 안전관리

제1절 전시디자인설치분야

제10조(기본부스) ① 기 안전이 허용된 자재만 시공할 수 있다.
② 외관상 변형, 파손된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③ 3m가 넘는 부분은 별도 안전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구조를 보강하여야 한다.
④ 미관상 지장이 있는 부분은 칸막이로 시야를 차단하여야 한다.
⑤ 구조상 흔들림이 심할 경우에는 보강하거나 버팀대 등을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⑥ 시스템 내부에 조명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변형이나 붕괴 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구조물 이동 시 바닥이나 기 시설물에 파손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구조물에 사용되는 전등의 결선은 전기공사로 판단하여 전기업체에 시공하도록 한다.
⑨ 기본부스에 사용되는 합판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가 정하는 기관(관할 소방서, 소방산업기술원)의 시험성적서 또는 결과 통보서를 득하여야 한다.

제11조(목재 부스, 시스템 부스) ① 목재의 공사는 전시홀 및 로비에서 시공할 수 없으며, 단순 조립 목공부스에 한하여 홀매니저의 승인을 득한 후에 공사할 수 있다.
②「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방염 대상물은 국가가 정하는 기관(관할 소방서, 소방산업기술원)의 시험성적서 또는 결과통보서를 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트지, 벽지, 광고·현수막 등 전시홀 내에 시공되는 마감재는 반드시 방염처리가 되어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시홀 내에서 페인트 작업은 할 수 없다.
⑤ 시공으로 발생되는 먼지나 폐기물은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⑥ 시공을 위하여 본드 즉 시너가 혼합된 재료는 일체 사용할 수 없다.

⑦ 화재 시 인체에 유해한 가스가 발생되는 제품(비닐계통 제품 등)은 일체 시공할 수 없다.
⑧ 천정이 막힐 경우 기존 소화설비의 살수에 장애가 되므로 추가 확산 소화기를 충분히 배치하여야 한다.
⑨ 가로재의 경우 수직재나 브래킷에 얹히고 시공을 해야 한다.
⑩ 전시 구조물이 중량물일 경우, 사전에 홀매니저와 협의하여야 한다.
⑪ 부스 시공 시 유리를 마감재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국가인증을 득한 강화유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신고 시 인증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⑫ 행사종료 후 유리 처리방안을 별도로 홀매니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행사 준비기간) ① 작업신고는 행사 준비 전 작업신고는 제4조의 작업신고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② 독립부스에 시공하는 모든 목재는 방염처리 되었거나 불연성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 방염 되지 않은 자재 및 물품은 전시홀 내에 일체 반입을 할 수 없다.
2. 방염대상 자재 및 물품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방염처리를 하여야 하며, 법이 정하는 기관(관할소방서 성적서, 소방산업기술원) 시험 성적서 또는 결과통보서를 설치 전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방염증빙서류는 필히 장치 설치 전까지 제출하여 홀매니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부스 시공 시 전시장 벽면 및 전시홀 파티션 등 구조물에서 1m이상 이격 거리를 두고 시공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에 고정 설치할 수 없다. 파티션 파손 방지선인 노란선 안쪽으로 자재 및 물품 적재를 할 수 없다.
⑤ 전시홀 내 소화전설비, 비상구, 전기 EPS출입문 및 화장실 입구는 전시부스나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⑥ 전시홀 내 부스 시공 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은 그 즉시 수거 및 정리정돈하여 당일 처리한다.
⑦ 수원컨벤션센터 지정등록업체는 원칙적으로 전시홀 내에 사전 반입 및 물품 적재를 할 수 없다.

제13조(행사기간) 장치공사 업체는 행사 당일 개문과 동시에 시공부스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하여 참가업체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제14조(작업일정) 장치공사 업체는 재단의 승인을 받은 작업일정 및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자재, 물품반입, 적재를 할 수 없다.

제15조(리깅) ① 100kg 이상의 구조물을 리깅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조해석 안정성 검토를 통해 결속위치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장치 및 구조물 리깅 작업은 반드시 수원컨벤션센터 리깅 지정등록업체에 접수 의뢰하여야 한다.
③ 행사 최소 7일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천정에는 원칙적으로 전시 및 선전광고용 물체 등을 설치할 수 없다. 단, 배너 등 경량물일 때에는 재단의 사전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시설물 높이제한) ① 구조물 및 전시부스의 높이가 5m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구조해석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며, 구조물의 최대 설치 높이는 8m 미만으로 제한한다.
② 전시장 천장트러스에서 하부로 내리는 구조물(현수막 등)은 전시장 바닥에서 6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제17조(복층) 사용자는 다음 각 호를 충족시키는 경우 전시부스를 복층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① 전시부스 설치 시 구조 계산서를 7일 전까지 제출하여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완료된 구조 계산은 3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복층면적은 사용면적(바닥면적)의 1/2 이내로 하여야 하며, 초과할 경우 안전성 유·무 확인 후 협의를 통하여 승인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③ 전시스탠드 칸막이는 둘레의 1/2 이상을 개방시켜야 하며, 전시부스가 전시품일 경우 홀매니저와 협의 결정 후 설치한다.
④ 복층 계단의 폭은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복층 내부에는 보행거리 10m마다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⑥ 복층 부분의 상층의 천장은 반드시 개방하여야 한다. 단, 제품자체가 전시부스인 경우 구조해석 및 방염시험성적서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할 수 있다.
⑦ 복층 출입구는 넓이 0.9m 이상으로 피난방향으로 열려야 하며, 입구 앞 상단에는 충전식 비상 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⑧ 안전관리요원을 반드시 상주시켜야 한다.

⑨ 천장부분이 마감되는 경우에는 천장에 10㎡당 1개 이상의 자동 확산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⑩ 복층 외벽 마감재로 경량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리, 철재 등은 사용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유리에 한하여 제11조(목재부스, 시스템부스) 제12항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제18조(통로) ① 전시 스탠드 간 통로 폭은 3m이상 이어야 한다.

② 통로는 비상구와 직선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전시홀 바닥에 대피로 표시를 최소 30m 간격, 최소 500mm x 500mm 이상 크기로 제작 부착하여 참가업체 및 참관객이 인지 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통로에는 긴급 피난 시 방해가 되는 설비 또는 전시품을 설치할 수 없다.

④ 비상구, EPS출입문, 소화전설비 및 화장실 입구 부분에는 전시부스나 부대시설을 설치 할 수 없다. 부득이 설치가 필요할 경우 시공 시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당 부분이 노출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⑤ 전시부스 설치 시 시설물 벽면에서 1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여야 하며, 무빙월 파손 방지를 위하여 노란선 안쪽에 물품 적재, 설치 등을 할 수 없다.

제19조(사용자재) ① 자재는 방염처리 되었거나 불연성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제20조에 의거하여 방염처리하여야 한다.

③ 방염합판의 경우 흰색수성도료를 사용하여 합판 전체를 방염 처리하여 입고하여야 하며, 그 외 각목류 또한 방염을 완료하여 소방서 또는 소방산업기술원에서 발행한 서류를 재단에 제출한 후 입고하여야 한다.

④ 본 시설의 경우 소방법에 의거 문화 집회시설로 구분됨으로, 도료의 경우 소방산업기술연구원의 형식승인을 득한 제품일지라도, 유성이거나「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위해성평가의 대상물질'을 포함하는 도료는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위험물의 반、출입 및 취급제한) ① 위험물을 전시장에 반입 또는 반출코자 할 때에는 위험물 반·출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재단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하며, 재단의 승인을 받은 물품 수량 외의 위험물을 전시홀 내에 반입 할 수 없다.

② 위험물 반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위험물 취급에 관한 제반사항은 소방법령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야

한다.
④ 전시홀 내에서는 재단의 승인없이 화기를 취급할 수 없다.
⑤ 위험물의 취급, 보관은 수원컨벤션센터 홀매니저 및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전기기기 사용제한) 전시홀 내에서는 전기톱, 전기 대패, 용접기, 전기그라인더 등 전동공구 및 산소 절단기는 사용할 수 없다. 단, 전시홀 내 콤프레셔 사용 시에는 사전승인을 득하여 작업 전원을 별도로 신청해야 사용할 수 있으며, 보일러, 용광로, 스토브 등 위험성이 높은 전시품은 작동할 수 없다.

제22조(전열기구 사용제한) ① 전열기구 작동 시 표면온도 70℃ 이상인 때에는 파손 시 파편이 관람객에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의 안전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시작동용 전열 기구는 목재로 된 진열대에 설치할 수 없으며 바닥으로부터 20cm이상 높이의 불연성 진열대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전기 취사구, 다리미 등 전열제품 등에 인접한 벽면은 불연성 재료로 보호하여야 한다.
④ 전열기구 사용 전시부스에는 카펫을 설치할 수 없다.
⑤ 전열기구 전원선은 내열전선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⑥ 모든 전열기구는 안전스위치가 설치된 제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절 전기공사 분야

제23조(행사 준비기간) ① 전시홀 내 모든 전기공사는 지정등록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 동력간선 시공업체는 전시 참가 업체별 신청 용량을 충분히 확인하여 시공한다.
③ 반드시 전기가 차단된 상태인지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하며, 참가업체 부스에 시공하는 분전반은 내방객의 이동통로, 화재 시 대피로, 밀폐된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1. 전선, 퓨즈 스위치 등 전기공사에 사용되는 제품은 반드시 안전규격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부스 조명시설 시공 시 1㎡당 100W를 초과할 수 없다.

⑤ 할로겐 조명은 열에 의한 과열로 코팅부분이 손상되는 기구는 사용할 수 없다.
⑥ 부스에 설치할 할로겐 조명은 외부의 물체와 이격거리 40cm 이상 취부하여야 한다.
⑦ 전시장내 동력, 전열, 조명, 배선 cable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60%이상 시공할 수 없다.
⑧ 220V 노출콘센트 설치 시 비 접지 콘센트는 사용할 수 없다.
⑨ 전시장 내 배선공사시 전기용량, 전압, 전류 관계없이 IV전선 및 PVC 비닐코드 선은 사용할 수 없다.
⑩ 부스에 공급할 메인전원은 CASE 없는 노 휴즈 브레카(no fuse breaker)만 부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⑪ 부스 내 전열 및 조명 메인전원은 누전차단기(ELB)를 설치 시공한다.
⑫ 주최자 또는 대행사와의 계약을 통해 전시 전반에 대해 전력을 운영하는 전기업체는 행사 전일 12시(자정)까지 모든 작업을 완료하여 전력을 공급하여야 한다.
⑬ 트렌치 커버 및 트렌치 홀 캡을 사용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⑭ 작업할 수 있는 전기시설 수량을 파악하여 충분하게 사전 설치한 후 홀매니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⑮ 통로 및 부스 내에 노출, 돌출되는 전기시설은 안전하고 견고하게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안전표시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⑯ 전시장 내 동일 유틸리티 박스에서 전기와 급배수의 동시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단, 수원컨벤션센터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전기와 배수는 동시 설치가 가능하다.
⑰ 상기 절차를 무시할 경우, 행사 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공사업체 및 주최자에 있다.

제24조(행사기간) ① 간선 시공업체는 개문과 동시 주최자에 전시동력을 투입여부를 확인하여 부스별 전원을 확인한다.
② 독립부스 시공업체는 개문과 동시 시공부스에 대하여 조명 및 전시동력을 확인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③ 간선 시공업체는 행사 기간 중 행사장 내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이상유무를 체크하여야 한다.
④ 간선 시공업체는 전시행사 종료 시 이상 유무를 체크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전시행사 철거기간) ① 전시행사 종료 시 전시동력 차단 전에 일체 작업을 할 수 없다.

② 철거 작업 중 수원컨벤션센터 전시홀 내부 시설물을 파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행사용 자재 철거 시 기존 시설의 손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만약 이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홀매니저와 협의 후 사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④ 행사장 내 작업 전선 및 자재의 돌출 시 안전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⑤ 행사 최종 철거 후 행사장내 시설물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홀매니저에게 확인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⑥ 철거 후 잔재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발생 시 시공업체가 처리하여야 한다.

⑦ 상기 절차를 무시하여 행사 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공사업체 및 주최자에 있다.

제3절 렌탈(가구/비품) 분야

제26조(렌탈(가구/비품)) ① 항상 깨끗한 상태의 제품을 제공한다.

② 가구/비품의 손질을 위한 신나, 락카 등은 전시홀 반입을 금지한다.

③ 임대 전시홀 및 수원컨벤션센터가 지정한 장소 외에는 적재할 수 없으며, 사전에 임대 물품을 적재하지 말아야 한다.

④ 행사 종료 후 비품 및 사무기기는 즉시 철수하여야 하며, 유실시 수원컨벤션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전시홀 내에서는 가구, 비품을 제작 또는 조립할 수 없다.

⑥ 가구 등 임대품은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 작업신고는 전시회별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작업자만이 전시장에서 작업할 수 있다.

제4절 카펫/파이텍스 분야

제27조(카펫/ 파이텍스 설치) ① 카펫, 파이텍스, 타일카펫 등은 '소방산업기술연구원'에서 승인하여 결과 통보서를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 시료의 일부를 채취하여 성적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라텍스’를 포함한 접착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승인된 테이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③ 마감 시 연결 부분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④ 시공 후 발생한 잔재물과 보양으로 사용한 비닐은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⑤ 통로 바닥 시공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⑥ 부스바닥 시공 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승인한 테이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⑦ 전체평면도에 통로 및 부스별 기재를 명확히 하고, 비닐사용 및 테이프 사용여부를 명시하여 홀매니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카펫 시공으로 인하여 들뜸이나 밀림이 발생하여, 주최자 및 내방객에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사업체 및 주최자가 책임을 진다.
⑨ 바닥마감재 자재는 양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⑩ 현장대리인은 철거 완료 후 홀매니저실에 퇴실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⑪ 작업신고와 동일한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할 경우 즉시 신고하여 홀매니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⑫ 기 신고한 작업자만이 전시홀 내에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⑬ 행사종료 이후, 바닥보양재 및 자재는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제5절 광고싸인물 분야

제28조(광고싸인물, 안내싸인물의 설치) ① 광고안내시설물 설치기준 및 설치요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전시 홍보를 위한 아치, 현수막, 안내 입간판 등 구조물이나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배치 위치도 및 설계도를 전시장 사용개시 3일전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행사별 전시홀 임대일정을 준수하여 설치 및 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유료광고 싸인물은 해당부서와 별도의 협의를 통하여 설치 및 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⑤ 전시홀 내 변형된 광고싸인물(사각현수막) 설치는 사전에 수원컨벤션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고소 작업 시 반드시 안전 장구류(안전모 포함)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설치한 광고, 안내싸인물 등은 행사종료 후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미철거 시 본 지침에 의거하여 제재 조치한다.

제6절 급배수/ 압축공기(Air) 분야

제29조(급배수/ 압축공기(Air) 안전관리) ① 통로에 노출되는 급배수를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공업체는 호스 및 밸브 등 설비품은 규격이 인증된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 통로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주의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작업신고는 전시회별로 신고를 해야 하며, 부위별로 압축공기와 급배수를 나누어 신고하여야 한다.

⑤ 기 작업 신고한 작업자만이 전시장에서 작업을 할 수 없다.

⑥ 시공 전 반드시 공기나 급수의 청소를 시행한 다음에 설비에 급수를 결선하여야 한다.

⑦ 급·배수의 시공 시 중간에 멀티밸브를 연결하여 시공할 수 없다.

⑧ 시공완료 및 철거 후 설비의 잔재물은 전시장이나 통로 등에 방치 할 수 없으며, 즉각 처리하여야 한다.

제30조(급배수/ 압축공기(Air) 설치) ① 시공자는 모든 시공자재를 KS규격 또는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② 급·배수, 압축공기는 전시장 홀별 유틸리티 박스 위치를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급수배관 및 압축공기용 배관 자재는 상용압력의 2배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배관을 연결하는 나사 접속부위는 반드시 테프론 테이프로 기밀 처리 후 접속한다.

⑤ 고압호스 연결시 호스닛플 전용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호스밴드는 ST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호스의 곡율 반경은 호스 직경의 6배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⑦ 압축공기 호스와 전시품 기기 연결은 원터치 커넥터를 사용하여 한다.

⑧ 배관 및 호스 등 접속이 끝난 후 반드시 누설검사를 실시한다.

⑨ 배수관은 가능한 짧게 시공하고 배관 내 배수가 원활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⑩ 배관의 가장 낮은 위치에 퇴수밸브를 설치하여 급수를 퇴수할 수 있도록 배관 시공한다.

⑪ 배관은 원칙적으로 트렌치 내부로 매립하여 배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립부에서의 이음매 접속은 피해야 한다.
⑫ 급수관 및 압축공기 호스를 전시품에 접속하기 전에 중간밸브를 열어 배관 내 이물질을 제거한 후 접속해야 한다.
⑬ 중간밸브는 비상시 신속히 개폐할 수 있도록 노출하여 고정 설치하여야 한다.
⑭ 시공자는 전시기간 중 폐장 전 필히 중간밸브를 닫은 후 퇴실한다.
⑮ 시공업체는 트렌치 혹은 유틸리티 박스의 커버를 사용할 경우 프레임에 이물질의 청소를 시행하여야 한다.
⑯ 누수 및 하자의 책임 여부에 상관없이 설치 업체는 관리 및 점검을 수시로 하여야 한다.
⑰ 현장대리인은 행사 개최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한다. 단 공사 또는 행사특성에 따라 홀매니저와 협의 후 상주 유·무를 결정한다.
⑱ 참가업체 및 카페테리아 부스 내에 급배수 설비 공사를 시행할 시 1차로 바닥을 방수포(시트), 비닐(0.2mm이상) 등으로 2중 보양하여야 하며 마감은 파이텍스로 시공한다.

제31조(전시행사 및 철거기간) ① 시공업체는 개문과 동시 급/배수 공급 부스에 누수현상 등 문제 발생 시 행사주최자에게 급수 및 에어 투입 여부를 확인하고 투입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시공업체는 전시행사 준비기간부터 철거기간까지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상주시켜야 하며, 급수 설비 및 압축공기설비 공급 담당 부서와 항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시공업체는 행사기간 중 대기하여 행사장 내 상시 순찰하여 이상 유·무를 체크하여야 한다.
④ 시공업체는 전시행사 종료 시 이상 유·무를 체크하여 문제 발생 시 반드시 기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철거 후 반드시 수원컨벤션센터 홀매니저에게 철거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절 경비 용역 분야

제32조(인력투입기준) ① 설치, 철거를 제외한 행사기간 중에는 경비지도사 1인을 반드시 상주시켜야 하며, 경비지도사는 홀당 배치되는 의무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경비지도사의 배치 및 업무는 경비업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② 인력 투입기준은 설치, 행사, 철거 시 동일하게 적용된다.

③ 행사 특성에 따라 인력의 배치 및 과업은 주최자와 경비업체 간 협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사고 발생 시 책임은 경비 업체에 있다.

1. 인력투입기준

구분		인원
전홀 사용	주 출입구	2명
	보조 출입구	1명(출입구마다)
	내부순찰	2명
	하역장(화물)	1명
합계		6명
분할 사용	주 출입구	1명
	내부순찰	1명
	하역장	1명
합계		3명

④ 장기 및 이벤트 행사의 인력투입기준

1. 전체 및 분할사용 구분 없이 3명 투입
2. 유원시설 면허를 취득한 행사의 경우 기구 당 안전스텝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며, 개장시간 동안 안전스텝을 상시 운영 배치하여야 한다.

제33조(행사준비기간) ① 보안요원 근무배치 신고는 반드시 홀매니저실에서 하여야 하며, 계약 시 본 지침에서 정하는 인력 이상을 투입한 후, 홀매니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시 준비기간 중에는 화재, 안전사고 및 시설물 훼손을 예방하고 출입자를 선별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③ 전시 준비기간 중에는 수시로 안전순찰을 실시하여 흡연자를 통제하고, 이상유ㆍ무 발견 시 주최자 및 홀매니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순찰도중 화재,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훼손요인이나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홀매니저에게 보고한 후 지시에 따른다.

⑤ 중량물을 적재한 대형 화물 차량의 진입 및 제한된 전동공구를 시공 할 때에는 즉시 중지시키고 홀매니저에게 보고한 후 통제에 따른다.

⑥ 행사관련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홀매니저에게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⑦ 단정한 복장 및 바른 자세로 근무에 임해야 한다.

⑧ 작업자 입, 출입 시 안전 장구(안전모 포함) 착용 유·무를 확인한 후 입실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⑨ 보안 현장대리인은 수원컨벤션센터 홀매니저와 수원컨벤션센터 비품에 대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분실 및 파손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34조(행사기간) ① 전시 개최기간 중에는 내방객 및 관람객의 질서유지와 친절한 안내 자세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② 순찰을 수시로 실시하여 흡연자 통제, 화재, 도난 등 상황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③ 순찰 중 이상 유ㆍ무 발견 시 홀매니저 및 주최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단정한 복장 및 바른 자세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35조(철거기간) ① 전시품 반출 및 장치물 철거 시 출입자 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주차관리실과 협조하여 반출차량이 밀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순찰을 통하여 흡연자 통제, 화재,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훼손여부를 점검하여 발견 되면 즉시 홀매니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④ 철거종료 후 전시홀 보안은 전시장 시설물 점검 및 비품 파손 유·무를 확인하고 분출된 비품을 회수하여 홀매니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완료 후 전시장 출입구 폐문을 위하여 수원컨벤션센터 보안팀에게 인계하고 철수한다.

제36조(보고의무) ① 매일 특이사항 및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에 대한 위치 및 인원을 익일 개장 전까지 홀매니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일 행사종료 후 전시홀 내부 및 각 사무실의 화재예방 점검을 하고, 주최자 퇴실 확인 후 철수한다. 단 주최자 잔업으로 퇴실하지 않을 경우, 최종 점검 내용을 주최자 및 홀매니저에 보고 후 철수하여야 한다.
③ 전시홀 보안은 일 2회 보안센터 내 출퇴근부에 출퇴근 서명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1차 : 07:00~08:00, 2차 : 17:00~18:00)

제37조(민원발생시 처리) ① 소지품 분실 신고 시에는 분실자의 인적사항, 분실장소, 분실시간 등을 기재하여 전 근무자 및 미화원, 주최자 사무실에 연락하여 분실물 습득여부를 확인하고 분실물을 습득하였을 시는 분실자에게 연락을 하여 분실물을 인계 한다.
② 미아발생 신고 시에는, 보호자가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미아 발생시간, 장소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모든 근무자에게 전달 및 전시홀 내 방송을 통하여 미아

를 찾게 한다. 또한, 미아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름 및 주소, 전화번호, 보호자의 핸드폰 번호를 파악한 뒤 전시홀 내 방송을 통하여 미아를 찾게 한다.

③ 사고 접수 시에는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상태가 경미한 경우에는 즉시조치 또는 주최자가 마련한 의무실로 안내하며 중상일 경우에는 119 구급차나 병원구급차를 불러 신속하게 이송하고 사고자의 인적사항과 사고내용, 시간 등을 정확하게 기록한다.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사고 발생 즉시 홀매니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E/L, E/S 고장 시에는 발견 및 신고 접수 시 즉시 방재실에 신고하고, 사고현장을 통제함과 동시에 내방객의 안전 및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기 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 시 현장처리가 가능한 경우 처리 후 주최자, 홀매니저에게 기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즉시 보고하고 현장을 통제하고 홀매니저 및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8조(화재발생시 또는 비상사태 시 준수사항) ① 수원컨벤션센터와 주최자간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신속한 상황 보고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비상통로 확보 및 내방객 안전하게 대피 시켜야 한다.

③ 소화기 사용법, 화재종류에 대한 진압요령 숙지하여 초기에 신속 대응을 하여야 한다.

제8절 운수통관 분야

제39조(작업신고요령) 전시참가업체와 전시품에 대한 수량, 각종제원을 명시하여 홀매니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행사준비, 철거기간) ① 전시물품 운송에 있어서 수원컨벤션센터 전시장 운영지침 제37조(초중량전시품 반입제한)에 의거하여 전시장 내 전시홀 3톤/㎡, 컨벤션홀 1.5톤/㎡ 이상 물품 반입과, 회의장 운영지침(B) 제26조(중량물품 반입제한)에 의거하여 회의실 내 0.5톤/㎡이상 물품 반입에 대하여 사전 수원컨벤션센터 승인여부를 확인 후 반입 하여야 한다.

② 전시품 하역에 있어서 수원컨벤션센터 지게차 등록업체를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전시품 특성상 손괴 및 망실에 우려가 있을 경우 외부업체를 사용할 수 있으나, 사전 수원컨벤션센터에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전시품 하역 후 발생한 보세박스는 전시장내에 보관할 수 없으며, 하역장을 사용하되 사전에 홀매니저와 지정장소 협의 후 운송업체에서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절 철거용역분야

제41조(작업의무) 전시부스 설치 및 철거작업은 전시회 개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임대 기간 내에 끝마쳐야 하며, 특히 철거지연으로 차기 전시회 개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업무상 책임이 철거업체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철거업체 및 주최자가 진다.

제42조(철거작업) ① 철거업체는 행사 철거 전일까지 신고를 반드시 하여 홀매니저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② 수원컨벤션센터가 정하는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③ 철거기간 안전 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④ 작업 전 반드시 압축공기, 급수, 전기 등이 작동하지 않도록 차단 유·무를 확인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⑤ 노출된 못은 제거해야 한다.

⑥ 전시홀 내, 외부 목재 구조물 해체 시 바닥 충격에 유의하여 보양 후 해체작업을 한다.

⑦ 집게차로 해체작업 시 안전사고 및 시설물 훼손에 유의하여 작업한다.

⑧ 유리, 모래, 흙, 부스러기 등을 철거할 경우 바닥을 보양하고 시행한다.

⑨ 철거 시에 잔재물이 남아 있을 경우 장치업체와 관계된 업체 공동 책임 하에 처리토록 한다.

⑩ 높이가 있는 구조물을 철거할 경우 반드시 전 방위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요원 배치 후 철거하여야 한다.

제10절 트러스, 리깅 분야

제43조(작업의무) ① 안전모, 안전화, 안전줄 등을 착용하고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작업신고서, 구조검토서와 실제 시공내용이 정확히 일치하여야 한다.

③ 모든 제반사항은 구조계산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④ 리깅의 경우 구조검토 범위는 수원컨벤션센터 천장에 매달리는 외구조물에 추가로 매달리는 구조물까지 구조검토를 득하여야 한다.

제44조(천정트러스 리깅 공사 절차) ① 트러스 시공업체는 수원컨벤션센터 구조검토서에 따른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② 리깅시공 절차
1. 장치 및 구조물 리깅 신청접수는 반드시 수원컨벤션센터 리깅 지정등록업체에 접수 의뢰하여야 한다.
2. 행사 최소 7일 전까지는 접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3. 수원컨벤션센터 리깅 지정등록업체는 총괄 접수 후 수원컨벤션센터 지정 구조해석업체에 안전성 검토의뢰 구조계산 완료 및 리깅 포인트를 부여받아 작업 진행을 확정하여야 한다.
4. 수원컨벤션센터 리깅 지정등록업체는 작업 완료 후 수원컨벤션센터 지정 구조해석업체로부터 리깅 시 제출서류에 명기된 대로 시공하였는지에 대하여 현장 감리를 하고, 감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트러스.리깅 작업) ① 트러스 재질은 반드시 알루미늄 소재계열 60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리깅포인트당 300kg이상의 구조물을 상부설치(Hanging)시에는 반드시 구조해석 안정성 검토를 통해 결속위치를 부여받아야 한다.
③ 트러스는 직선 18m이상 설치 시에는 720mm x 560mm를 사용해야 하며 부착물하중이 전체 100kg 미만인 경우에는 400mm x 400mm도 가능하다.
④ 전시장 천정트러스 설치간격은 8.4m이며 각 트러스는 3m당 리깅포인트(절점) 1개소로 제한한다.
⑤ 수원컨벤션센터 천장트러스와 설치 구조물 상부설치(Hanging)시에는 반드시 1ton 이상의 체인모터와 슬링바를 이용하여 간결하여야 하며, wire의 사용은 불가하다. 단, 일부 수원컨벤션센터 천장트러스와 하부설치 구조물 연결 시에는 반드시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⑥ 트러스에 파라이트 및 맥 라이트를 부착할 때에는 고정 볼트 이외에 안전 고리 핀을 사용 2중 걸이를 해줌으로써 2중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⑦ 총 전기 부하용량이 250kw이상 시에는 별도의 전기 안전검사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⑧ 모든 리깅 작업 시에는 작업장 내에 하단에서는 일체의 다른 장치작업을 해

서는 안되며 반드시 안전요원이 상주 안전유도를 해주어야 한다.
⑨ 리깅 시 반드시 구조계산을 득하여 안전성 검토 후 시공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의 범위는 공중 설치물 최하단부의 접합부까지를 포함하도록 한다.

제46조(안전관리) ① 모든 작업자는 일체의 안전복장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유도요원까지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천정 빔에는 반드시 슬링바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안전수칙 중 필히 지정된 리깅 포인트에 해야 하며, 작업자는 검증받은 모터와이어를 사용해야 한다.
④ 구조물에 대한 이상 유무 발생시, 즉각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제11절 구조계산 및 감리분야

제47조(작업신고) ① 구조계산은 수원컨벤션센터 지정등록업체를 반드시 이용하여야 한다.
② 완료된 구조계산서는 발주업체, 시공업체, 구조 계산업체가 수원컨벤션센터가 요청한 확인서에 서명날인 후 사전 신고 시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 일주일 전 구조계산을 완료하고 담당매니저와 협의 완료 후 3일 안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8조(구조계산범위) ① 무대시공의 경우 기둥과 기둥사이 너비가 8m 이상인 경우 또는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인 경우 반드시 구조계산을 받아야 한다.
1. 상기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나, 무대 단이 형성되어 무대 높이가 50cm 초과할 경우 무대 하중 구조계산을 받아야 한다.
2. 무대(트러스 포함) 음향장비 및 별도 구조물을 상부설치(Hanging) 할 경우 홀매니저의 판단 하에 위험하다고 판단된다면 구조계산을 받아야 한다.

② 다수가 이용하는 구조물(계단식 의자, 장기행사 구조물 등)의 경우 반드시 구조계산을 득하여야 한다.
③ 구조물 높이가 5m를 초과하는 경우, 복층 구조물인 경우, 100kg 이상 리깅의 경우, 반드시 구조계산을 득하여야 한다.
④ 상기 조항에 없으나, 수원컨벤션센터가 구조계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조계산을 받아야 한다.

제12절 방염업체

제49조(방염신고) ① 방염업체는 행사 장치 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관할 소방서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발급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험성적서 또는 결과통보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거짓시료를 제출한 것이 적발될 경우 고발조치하고 수원컨벤션센터는 즉각 계약해지 한다. 또한 그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는 방염업체가 책임을 진다.

③ 행사 준비 기간 중 선방염 제품 입고 시 반드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배포하는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전시홀 내에 입고하여야 한다. 미부착된 제품은 입고할 수 없다.

④ 방염합판의 경우 흰색수성도료를 사용하여 합판 전체를 방염처리 하여 입고하여야 하며, 그 외 각목류 또한 방염을 완료하여 입고하여야 한다.

⑤ 본 시설의 경우 소방법에 의거 문화 집회시설로 구분됨으로, 도료의 경우 소방산업기술연구원의 형식승인을 득한 제품일지라도, 유성이거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위해성평가의 대상 물질'을 포함하는 도료는 사용할 수 없다.

제13절 전시홀 작업 시 공통 작업수칙

제50조(철구조물 공사 안전관리) ① 구조물 경우 일정 자격(용접 등 관련법적용)이상 기능공 등 자격을 갖춘 자가 작업을 해야 한다.

② 철물 운반할 경우 바닥, 벽 등에 파손우려가 있으므로 바닥에 손상이 없도록 작업을 해야 한다.

③ 중량물이 가해지는 트러스나 보의 경우 KS 또는 ISO9000 이상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자립구조가 취약한 구조물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⑤ 보양지나 자재박스, 공사 폐기물은 시공 후에 즉시 외부로 반출해야 한다.

제51조(조경 및 조형물 공사 안전관리) ① 건초류, 스티로폼, 인조잔디, 플라스틱, 비닐류 등 방염할 수 없는 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

② 물을 사용한 조경공사의 경우 물 공사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모래, 흙, 자갈 등 사용할 경우 바닥에 보양을 철저히 시행한 후에 후속 공정을 하여야 한다.

제52조(물 공사 안전관리) ① 물을 사용하는 공사(시걸)의 경우 물이 누수 방지 대책을 세워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② 물을 사용하는 공사는 사전에 홀매니저와 충분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③ 물의 양이 3톤/㎡이 넘을 경우 구조검토를 사전에 충분히 시행하여야 한다.
④ 분수나 연못을 시공하는 경우 시공 10일 전에 별도 협의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⑤ 방수에 대한 시공의 경우 작업신고 할 때 세부 상세도면과 시방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바닥공사(앙카、볼트) 안전관리) ① 전시홀 내 앙카볼트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부득이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수원컨벤션센터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원상 복구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주최자에게 있다.

제54조(놀이시설 공사 안전관리) ① 관할법령에 의거 시공, 안전관리자 선임 등 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득한 내용을 수원컨벤션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행사 시작부터 종료까지 안전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익일 개장 전 수원컨벤션센터 홀매니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놀이시설의 경우 반드시 구조계산을 득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상 이용가능 인원을 명기하여 안전스텝과 함께 인원수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각 놀이기구에 안전요원 1인 이상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제55조(행사 중 지게차 운행 및 안전관리) ① 전시물품의 반입, 반출을 위하여 지게차를 운용하는 업체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원컨벤션센터 홀매니저에게 작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신고필증 스티커를 발부받아 차량 전면 우측 상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신고필증을 부착하지 아니한 차량은 전시홀 출입을 할 수 없다.
② 전시물품 운송에 있어 수원컨벤션센터 전시장 운영지침(B) 제37조(초중량전시품 반입제한)에 의거하여 전시장 내 전시홀 3톤/㎡, 컨벤션홀 1.5톤/㎡ 이상

물품 반입과, 회의장 운영지침(B) 제26조(중량물품 반입제한)에 의거하여 회의실 내 0.5톤/㎡ 이상 물품 반입에 대하여 사전 수원컨벤션센터 승인여부를 확인 후 반입 하여야 한다.

③ 전시홀 내 진입하는 모든 지게차는 상시 정비하여 최소의 매연도 발생하지 말아야 하며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④ 모든 지게차 운전자는 면허증 소지자가 운전하여야 하며 무자격자는 운행할 수 없다.

⑤ 전시장 내 진입하는 모든 지게차는 보험에 가입한 차량이어야 한다.

⑥ 보유 지게차 및 리프트 등의 장비 관리 정비를 수시로 실시하여 운행 중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56조(지게차 안전관리) ① 주행 시의 안전수칙

1. 지게차 운전자는 안전을 위하여 전시홀 내, 외부에서 서행 운행하여야 한다.
2. 전시홀 내에서는 급출발이나, 급브레이크 조작, 급선회 등을 할 수 없다.
3. 지게차 운행 시 전후좌우를 충분히 관찰하여야 하며 적재 화물에 가려 시야를 현저하게 방해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한다.

   3-1)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시킨다.

   3-2) 후진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4. 화물적재 상태에서 30cm이상으로 들어 올리거나 마스트를 수직이나 앞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주행할 수 없다.
5. 포크나 포크 등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화물 아래에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 선회하는 경우에는 후륜이 바깥쪽으로 크게 회전하므로 사람이나 건물에 접촉 또는 충돌하지 않도록 천천히 선회하여야 한다.
7. 전시홀 내 및 하역장을 주행할 때에는 포크의 선단에 표식을 부착하는 등 보행자, 작업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포크 또는 파렛트, 스키드, 균형추(Counter balance)등에 사람을 태우고 주행할 수 없다.

② 야간작업시의 안전수칙

1. 야간에 지게차에 운전하는 경우에는 전조등 또는 후조등, 그 밖의 조명을 이용하여 현장 전체를 최대한 밝게 한 후에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2. 야간에는 원근감이나 지면의 고저가 불명확해져서 운전자가 심하게 착각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주위에 있는 작업자와 장애물에 주의하고, 안전한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3. 주차시의 안전을 위하여 지게차의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완전하게 걸고 변속 레버를 중립으로 한 후 포크 등을 바닥 면에 내리고 엔진을 정지시킨다.

제57조(기타사항) ① 전시홀 내, 외부에서 시멘트 및 석면자재를 사용하여 공사를 할 수 없다.

② 유리시공은 강화접합유리를 사용해야 하여 시공 전 작업신고 시 인증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장 현장관리 및 제재기준

제58조(공통적용기준) ① 지정등록업체가 수원컨벤션센터 전시장·회의실 운영규정, 전시장 운영지침, 회의실 운영지침, 전시홀 작업 안전관리지침을 위반한 경우, 본 지침서의 제재기준 및 수원컨벤션센터 지정등록업체 심사제도에 의거하여 제재할 수 있다.

② 현장대리인만 상주하고, 공사의 전부를 비등록업체가 공사를 하는 경우 또는 명의 도용에 관한 민원이나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및 필요 관련서류 첨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홀매니저와 협의 없이 자재반입 및 적재, 공사 반출, 철거 등을 할 수 없다.

④ 모든 작업은 시공업체 명의로 사전 작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승인 완료 후 승인 확인 출력서와 현장대리인 및 대표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한 후 공사현황표를 작성하여, 시공 부스에 부착하여야 시공할 수 있다.

⑤ 현장대리인은 수원컨벤션센터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작업자에게 수원컨벤션센터 전시장 운영지침, 회의실 운영지침, 전시홀 작업 안전관리지침을 숙지시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 모든 작업원은 수원컨벤션센터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⑦ 수원컨벤션센터 청렴의무 사항 위반 시(선물, 금품, 향응 등 제공시) 본 지침에 의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9조(안전관리 위반 제재의 종류와 기준) ① 주의(벌점1)

1. 전시장 운영지침, 회의실 운영지침, 본 지침을 위반한 경우

② 경고(벌점2)

1. 전시장 운영지침, 회의실 운영지침, 본 지침을 의도적으로 위반하여 수원컨

벤션센터, 주최자, 참가업체, 내방객 등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2. 전시장 운영지침, 회의실 운영지침, 본 지침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안전관련 법령 등에서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하거나 홀매니저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시공할 경우
3. 고객 (주최자 및 공사 계약 고객)과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 접수되는 경우
4. 당해연도에 주의 2회를 받아 누적점수가 2점에 도달할 경우 경고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③ 영업정지(벌점3)

1. 전시장 운영지침, 회의실 운영지침, 본 지침을 지키지 아니하여 화재 또는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 단, 사고의 규모가 등록보험금 또는 보증금 총금액을 넘지 않을 경우
2. 영업정지 기간은 1~3개월로 하되 정지기간은 수원컨벤션센터 내부 심사를 통하여 결정한다.

④ 등록 취소(계약해지)(벌점4)

1. 전시장 운영지침, 회의실 운영지침, 본 지침을 지키지 아니하여 화재 또는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 단 사고의 규모가 등록보험금 또는 보증금 총금액을 초과할 경우
2. 당해연도 누적점수 -4점에 도달할 경우
3. 담당 매니저에게 금품 및 향응 제공, 부정청탁 등의 행위를 하여 적발될 경우
4. 상기 제1호부터 제3호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즉시 해지 및 차년도 지정등록업체에 참여할 수 없다.

제60조(제재절차와 효력) ① 지정등록업체에 대한 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1. 사유서 제출 요구 공문 발송. 단, 제재의 범위가 주의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위반사실에 있어 충분한 자료가 확보된 경우(위반 사진 등) 사유서를 생략할 수 있다.
2. 사유서 제출
3. 내부 검토 및 제재 수위 결정
4. 제재 결정 공문 발송

② 지정등록업체에 대한 제재의 종류와 효력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주의 : 주의의 효력은 당해연도에 한한다.
2. 경고 : 경고의 효력은 당해연도에 한한다.

3. 정지 : 정지의 효력은 당해연도에 한한다.
4. 해지 : 당해연도에 등록을 즉시 취소하고 및 차기년도 12개월간 등록 불가.

제61조(기타공통사항) ① 수원컨벤션센터 전시장 운영지침, 회의실 운영지침, 본 지침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위법을 했을 경우 기관에 고발 조치 및 수원컨벤션센터 내부 심사를 통하여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현장 대리인계
(전시장치)

▶ **행 사 명 :** _____ ▶ **행사장소 :** _____

▶ **설치기간 :** _____ ▶ **행사기간 :** _____ ▶ **철거기간 :** _____

순번	참가업체	부스번호	부스 수	전기업체	카펫업체	철거업체
1						
2						
3						
4						
5						

* "란" 부족 시 별지사용

상주 현장책임자

성 명 : **직 책 :** **핸드폰 :**

위 사람을 동 행사 현장책임자로 선임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_____

회사명 : _____ 대표자: _____ (인)

담당자 : _____ (연락처: - -)

Suwon Convention Center 수원컨벤션센터

[별지 제2호 서식]

현장 대리인계
(서비스 분야)

▶ **신청분야** : □ 전기 □ 급배수 □ 카펫 □ 운수통관 □ 지게차 □ 철거 □ 경비 □ 가구비품 □ 리깅□ 방염

▶ **행 사 명** : _____ ▶ **행사장소** : _____

▶ **설치기간** : _____ ▶ **행사기간** : _____ ▶ **철거기간** : _____

순번	참가업체	부스번호	부스 수	전시장치업체 /발주업체	특이사항
1					전기 : 용량
2					지게차 : 전시품 제원
3					
4					
5					

* "란" 부족 시 별지사용 / 경비분야는 참가업체정보 기재 불필요

상주 현장책임자

성 명 : **직 책 :** **핸드폰 :**

위 사람을 동 행사 현장책임자로 선임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_____

회사명 : _____ 대표자: _____ (인)

담당자 : _____ (연락처: - -)

Suwon Convention Center 수원컨벤션센터

[별지 제3호 서식]

현장 대리인계
(광고싸인물)

▶ **행 사 명 :** _____ ▶ **행사장소 :** _____

▶ **설치기간 :** _____ ▶ **행사기간 :** _____ ▶ **철거기간 :** _____

순번	주최자	담당자	연락처	특이사항
1				
2				
3				
4				
5				

* "란" 부족 시 별지사용

상주 현장책임자

성 명 : **직 책 :** **핸드폰 :**

위 사람을 동 행사 현장책임자로 선임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_____

회사명 : _____ 대표자: _____ (인)

담당자 : _____ (연락처: - -)

Suwon Convention Center 수원컨벤션센터

[별지 제4호 서식]

작업자 명단 신고서

▶ **행 사 명 :** _____

▶ **행사장소 :** _____ ▶ **시공분야 :** _____

▶ **설치기간 :** _____ ▶ **행사기간 :** _____ ▶ **철거기간 :** _____

◇ 작 업 자 명 단 ◇

순번	성 명	직 종	생년월일	연락처(전화)
1				
2				
3				
4				
5				
6				
7				
8				
9				
10				

*“란” 부족 시 별지사용

수원컨벤션센터 전시장, 회의실 운영규정을 준수하며 상기와 같이 작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_____

회사명 : _____ 대표자: _____ (인)

담당자 : _____ (연락처: - -)

Suwon Convention Center 수원컨벤션센터

[별지 제5호 서식]

급배수/Air 시공 및 철거 보고서

▶ **행 사 명** : _____ ▶ **행사장소** : _____

▶ **설치기간** : _____ ▶ **행사기간** : _____ ▶ **철거기간** : _____

설치일자					
철거일자					
참가업체명 (발주업체명)			부스번호		
급수개소		배수개소		Air개소	
설치담당자			휴대폰		
철거담당자			휴대폰		
시설관리자			휴대폰		

수원컨벤션센터 전시장, 회의실 운영규정을 준수하며 상기와 같이
급배수/압축공기 작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_____

회사명 : _____ 대표자: _____ (인)

담당자 : _____ (연락처: - -)

Suwon Convention Center 수원컨벤션센터

[별지 제6호 서식]

장비 투입 신고서 (운송통관)

▶ **행 사 명** : _____

▶ **행사기간** : _____ ▶ **행사장소** : _____

▶ **반입일시** : _____ ▶ **반출일시** : _____

일시	크레인/지게차					
	장비렌탈 회사	중량 (25,38,50ton)	작업내용	장비렌탈 회사	중량 (25,38,50ton)	작업내용

수원컨벤션센터 전시장, 회의실 운영규정을 준수하며,
위와 같이 장비 투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_____

회사명 : _____ 대표자: _____ (인)

담당자 : _____ (연락처: - -)

Suwon Convention Center 수원컨벤션센터

[별지 제7호 서식]

철거 인력 및 장비투입 신고서

▶ 행 사 명 : _____ ▶ 행사장소 : _____

▶ 설치기간 : _____ ▶ 행사기간 : _____ ▶ 철거기간 : _____

<table>
<tr><td>참가업체명</td><td></td><td>장치업체명</td><td></td><td>부스 개소</td><td>개</td><td>철거부스</td><td>BOOTH</td></tr>
<tr><td colspan="8">★ 발주서 별첨 必 (발주서 위조 적발 시 등록 취소)</td></tr>
<tr><td rowspan="5">구 조 물</td><td rowspan="3">폐기물
처리업체</td><td colspan="6">1) 주소 :</td></tr>
<tr><td colspan="6">2) 업체명 :</td></tr>
<tr><td colspan="6">3) 연락처 :</td></tr>
<tr><td colspan="2">위험물
철거여부</td><td>☐ 있음 ☐ 없음
부스명:</td><td colspan="2">유리
철거여부</td><td>☐ 있음 ☐ 없음
부스명 :</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복층
철거여부</td><td>☐ 있음 ☐ 없음
부스명 :</td><td colspan="2">철거부스면적</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5">장비 및
인력</td><td>철골
철거여부</td><td>☐철거 ☐ 미철거</td><td>바닥
철거여부</td><td>☐철거 ☐ 미철거</td><td>폐기물
철거여부</td><td colspan="2">☐철거 ☐미철거</td></tr>
<tr><td>미철거
내용</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2">집게차 사용대수</td><td>대</td><td>압롤박스 사용대수
압롤박스 설치위치</td><td colspan="3">대
전시장 내 . 외</td></tr>
<tr><td colspan="2">철거 인원수</td><td>명</td><td>기타장비 사용내역</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철거 시작</td><td colspan="6">20 년 월 일(시)</td></tr>
<tr><td colspan="2">철거 완료</td><td colspan="6">20 년 월 일(시)</td></tr>
</table>

※ 특이사항 또는 추가 공사 시 신고 必

수원컨벤션센터 전시장, 회의실 운영규정을 준수하며,
위와 같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_____

회사명 : _____ 대표자: _____ (인)

담당자 : _____ (연락처: - -)

Suwon Convention Center 수원컨벤션센터

[별지 제8호 서식]

경비 근무자 명단 신고서

▶ **행 사 명** : _____ ▶ **행사장소** : _____

▶ **설치기간** : _____ ▶ **행사기간** : _____ ▶ **철거기간** : _____

구 분		성 명	직책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담당업무 (경비지도사 별도표시)
기간	날짜					
설치기간	월 일 (야 간) ( )名			-		
				-		
				-		
				-		
	월 일 (주 간) ( )名			-		
				-		
				-		
				-		
행사기간	월 일 (야 간) ( )名			-		
				-		
				-		
				-		
	월 일 (주 간) ( )名			-		
				-		
				-		
				-		
철거기간	월 일 (야 간) ( )名			-		
				-		
				-		
				-		
	월 일 (주 간) ( )名			-		
				-		
				-		
				-		

위 명단은 정확한 정보임을 확인하며, 현장 근무자와 동일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_____

회사명 : _____ 대표자: _____ (인)

담당자 : _____ (연락처: - -)

Suwon Convention Center 수원컨벤션센터

[별지 제9호 서식]

경비 근무자 배치 일정표

▶ 행 사 명 : _____ ▶ 행사장소 : _____

▶ 설치기간 : _____ ▶ 행사기간 : _____ ▶ 철거기간 : _____

구분		행사장순찰	현관출입구	하역셔터관리	하역장	전시홀 로비	외곽	기타
기간	날짜							
준비기간	월 일 ~ 월 일 (주간)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월 일 ~ 월 일 (주간)	명	명	명	명	명	명	명
행사기간	월 일 ~ 월 일 (주간)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월 일 ~ 월 일 (주간)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철거기간	월 일 ~ 월 일 (주간)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월 일 ~ 월 일 (주간)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참조>

전시장 경비업무 요약			
장치기간	행사기간	철거기간	숙지사항
화물 출입구 차량 유도안전 (출입구 제원 확인) - 반입, 반출품 확인 (도난방지, 위험물 반입금지) - 순찰시 안전사고 예방 철저 (위험요소제거, 시설물 훼손방지, 흡연금지 등) - 수원컨벤션센터 규정집 숙지철저	매일 아침 구역별 홀 내. 외부 점검 (이상 유.무 확인 후 홀매니저 보고 철저) - 청소원 및 참가업체 입장 시 출입증 확인 및 내부 순찰 강화 철저 - 검표 및 출입증 확인 시 친절하고 의연한 근무 태도 유지 - 암표, 잡상인, 호객행위 등 전시 유해 요소 발견 즉시 조치 - 퇴장시간, 출입문 통제 및 내부 순찰 강화 철저 - 완벽한 내부 점검 후 시건 장치 (위험요소 봉인처리 철저)	- 화물출입구 차량 통제 (안전. 질서 확보 및 원할 배차 통제 철저) - 주최자 지시에 따라 반출증 확인 철저 - 순찰자 시설물 훼손 확인 및 감시 철저(홀매니저 확인서 제출) - 안전하고 정확한 철거 (폐기물 및 비품, 전시품 등) 감독 철	- 출근 시간 엄수 (행사진행에 차질 우려) - 친절한 안내 및 통제 - 의연한 근무 태도 - 두발 및 복장 단정 철저 - 근무지 무단이탈 절대 금지 (사고 및 도난 발생) - 졸음. 신문. 휴대폰. 문자행위. 잡담 금지 - 비상연락망, 전시장 규정, 행사 규정 숙지 철저 - 전시장 및 행사관계자 신속 파악 - 홀매니저 및 주최자에게 신속한 보고 - 암표, 잡상인, 도우미 등과 교류 엄금

위와 같이 경비 근무자 배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_____

회사명 : _____ 대표자: _____ (인)

담당자 : _____ (연락처: - -)

Suwon Convention Center 수원컨벤션센터

[별지 제10호 서식]

가구 / 비품 반입(반출) 신고서

▶ **행 사 명 :** _____ ▶ **행사장소 :** _____

▶ **반입일시 :** _____ ▶ **행사기간 :** _____ ▶ **반출일시 :** _____

▶ **업 체 명 :** _____

▶ **특이사항** _____

▶ **홀매니저와 사전 협의한 적재 및 분출장소 :** _____
(반드시 사전협의 후 기재)

◇ 물품 렌탈 내역 ◇

순번	참가업체	부스번호	물품명	수량	비 고
1					
2					
3					
4					
5					

※ 단, 행사 지정협력사로 등록된 업체는 상기 내용을 기입하지 않아도 됨
* (주) "란" 부족 시 별지사용

수원컨벤션센터 전시장, 회의실 운영규정을 준수하며,
상기와 같이 가구비품을 반입(반출)하고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_____
회사명 : _____ 대표자: _____ (인)
담당자 : _____ (연락처: - -)

Suwon Convention Center 수원컨벤션센터

[별지 제11호 서식]

광고물 설치(변경) 신청서

▶ **행 사 명 :** _____

▶ **업 체 명 :** _____ ▶ **행사장소 :** _____

▶ **설치일시 :** _____ ▶ **행사기간 :** _____ ▶ **철거일시 :** _____

구분1	구분2	종류	위치	수량	규격	비고	비고
내부	현수막류	현수막	전시홀 내부 (전동식 현수막 바텐)	(　　)개	9m x 5.5m	상봉 + 하봉	홀매니저 사전협의 (설치 위치도면, 시안 필수제출)
			전시홀 로비	(　　)개	15m x 2.6m	상부 케이블타이, 하부 봉 설치	
	기타	행사안내판	전시홀 앞 로비	(　　)개	높이 4m 이내	목재류 시공 금지, 파이텍스/카펫 시공 필수	
		접수대		(　　)개			
		현황판		(　　)개			
외부	현수막류	가로등배너	야외광장 (Gate 5)	(　　)개	0.6m x 1.8m	1F 6개, B1 6개	
			건물정면 (광교로 방면)	(　　)개		2F 11개	
		외벽배너	건물 정면 타공판 (광교로 방면)	사용 /미사용	14.5m × 8.05m	사방줄미싱 (크레인작업 불가)	

※ 광고물 설치 전 반드시 수원시 및 수원컨벤션센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 : 미디어전광판 시설내역>

구분	종류	위치	수량	규격(pixel)	비고	
내부	가로전광판	전시홀 로비	1개	3,840 × 384	jpg, avi 만가능	<표출시간> 행사기간 중 08:00~21:00
	미디어 폴	전시홀 로비(기둥형)	1개	1,280 × 2,816		
	미디어월	전시홀 입구	3개 (홀별 1개씩)	5,760 × 2,160		
		2홀 인포 앞	1개	2,160 × 1,920		
외부	대형전광판	Gate 5 밖	1개	1,920 × 1,080		

수원컨벤션센터 전시장, 회의실 운영규정을 준수하며,
아래와 같이 광고물을 설치(변경)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_____

회사명 : _____ 대표자: _____ (인)

담당자 : _____ (연락처: - -)

Suwon Convention Center 수원컨벤션센터

[별지 제12호 서식]

구조검토 내역서

▶ **행 사 명** : _____

▶ **업 체 명** : _____ ▶ **행사장소** : _____

▶ **설치일시** : _____ ▶ **행사기간** : _____ ▶ **철거일시** : _____

Rigging 설치일자			
Rigging 철거일자			
참가업체명		부스번호	
현장담당자		핸드폰	
전체 하중		트러스 하중	
세부적인 하중 자료(DATA)			

* 상기사항과 공사내용은 일치하여야 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_____

회사명 : _____ 대표자: _____ (인)

담당자 : _____ (연락처: - -)

Suwon Convention Center 수원컨벤션센터

[별지 제13호 서식]

사 유 서

1. 행사 명 :
2. 참가업체 명 : 부스번호 :
3. 지정등록업체 명 :
4. 대표자 : 휴대폰 :
   현장대리인 : 직위 : 휴대폰 :
5. 관련규정
   . 수원컨벤션센터 전시장,회의실 운영규정
   전시장 운영지침, 회의실 운영지침, 전시홀 작업 안전관리지침
6. 위반사항 (육하원칙에 의거 간단히 기술)

당 업체는 공사 중 상기와 같이 관련규정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하며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회사전화 :
핸드폰 :

※ 붙임 : 작성자 신분증 사본 1부
※ 작성하신 사유서는 차기년도 지정등록업체 재등록 시 등록자격 기준에 반영됩니다.

Suwon Convention Center 수원컨벤션센터